김○○ 부장판사 징계결정 후 대응방안

2014. 11. 7.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1. 검토배경

▣ **김○○ 부장판사 징계절차 개시 예정**

- 11/7(금)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예정

▣ **징계결정 후 정치권, 언론, 법원 내부 등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 및 비판, 논란 예상**

- **[국회]**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징계 필요성 및 양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음

▣ **특히 법관들 사이에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일반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 있음 ⇨ 논란 확산 방지 필요**

- 징계 수위 및 향후 법관의 표현의 자유 제한 범위에 대한 관심
- 이번 사안에 한정하지 않고, 일부 법관들이 코트넷 게시판 등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 금지'는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문제제기, 비판을 할 가능성 있음
- ○○지법 성○○ 부장판사 게시글: 직권삭제와 관련하여 '법관의 표현의 자유' 거론한 바 있음

▣ **사전 대응방안 수립 필요**

- 전체적 대응기조 수립 ⇨ 적시 대응 준비 ⇨ 논란 확산 방지
- 대상별 예상반응 검토 ⇨ 대상별 대책 수립

2. 주요 대응기조

1 빠른 상황 파악 ⇨ 적시 대응 ⇨ 논란 확산 방지 2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 3 우회적 내부 설명, 협조 요청 ⇦ 설명자료 작성 4 또다른 논란거리 발생 가능성 차단 ⇨ 신중한 대응

▣ 1 **적시 대응을 위한 빠른 상황 파악**

● **행정처**

- 징계결정 후 주요 반응 지속적 파악
- 국회 반응(기조실), 코트넷 내부게시판(코트넷운영위원회), 언론 동향(공보관실)

● **전국 법원**(수석부장, 기획법관)

- 법원 내부(법관) 논란, 동요 증폭될 경우 보고 협조 요청

▣ 2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

● 징계 여부 및 양정은 법관징계위원회의 독립적 심의·결정사항 + 심의 내용 비공개(법관징계법 제13조)

● ⇨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안내글 게시는 부적절

- 오히려 논란이나 반발을 증폭할 우려

▣ 3 **설명자료 작성 ⇨ 우회적 내부 설명, 협조 요청**

● 법관윤리강령 취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글 작성

● 공보관실(언론 대응), 기조실(국회 대응) ⇨ 외부 설명 근거자료

● 법원장, 수석부장 커뮤니티 게시 ⇨ 내부 설명 근거자료

▣ 4 **또다른 논란거리 발생 가능성 차단 ⇨ 신중한 대응**

● 법원 내부 구성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게시글 내용의 부적절성, 징계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

● 일부 판사들의 경우 앞으로 법관윤리강령, 코트넷운영지침이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김○○ 부장판사의 게시글 직권 삭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음)

- ⇨ 징계결정과 관련한 내부 구성원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또다른 반발을 불러 일으켜 논란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

3. 징계결정 외부 공개(보도자료 배포) 시 대응 방안

1 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사전 통지
2 전례에 따라 징계결과(양정),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만 공개
3 법원장, 수석부장 커뮤니티 안내글 게시

1) 김○○ 부장판사 본인에 대한 사전 통지

- 자신의 징계결정 관련 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배포 전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필요

2) 공개범위 검토

▣ 징계결정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1] 징계심의 내용 비공개 원칙

- 법관징계법 제13조: 징계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

- [2] 법관징계위원회의 독립적 결정

- 법원행정처가 법관징계위원회의 독립적 징계결정에 관한 구체적 심의내용을 공개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

- [3] 대국회업무 관련 고려

- 국회: 수시로 법관, 법원공무원 징계에 관해 경위, 징계심의 내용 등 자료 요청

- 법원행정처: 징계심의 내용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한 비공개 입장

- 언론 등을 통하여 징계심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향후 국회 요청에 대응 곤란

▣ 징계결정 후 언론대응 전례

● 보도자료 배포

포함사항	▸ 징계결정(양정) ▸ 징계사유 ▸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 향후 절차
불포함사항	▸ 징계심의의 구체적 내용 ▸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 전례

징계대상자	보도자료 기재사항
○○○, ○○○(2012년)	징계결정,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개관, 전례
○○○(2012년)	징계결정, 징계사유, 구체적 위반조항인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대한 설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징계결정, 징계사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향후 절차 개관
○○○(2014년), ○○○(2014년)	보도자료 미배포(징계결정 이전 언론 미보도)

▣ 김○○ 부장판사 징계 후 징계 내용 공개 검토

● 보도자료 배포

- <u>전례에 따름 ⇨ 징계결정(양정), 징계사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향후 절차만을 내용으로 함</u>

- 보도자료에 배경과 이유, 근거 등을 기재한다고 해도 그 내용대로 기사가 나간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논란거리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공보관실 설명 자료 제공

- 법관윤리강령 취지 등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보관의 비공식적, 개

인적 설명을 위한 자료 제공 ⇦ 법원장 커뮤니티 안내 게시글과 동일한 내용

3) 법원장, 수석부장 커뮤니티 안내글 발송

- 법관징계위원회 결정 이후 법관 및 사법부 내부 동요 우려
- 법원행정처 처장 또는 차장 명의로 법원장·수석부장 커뮤니티에 글 게시 ⇨ 법원장·수석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법관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 설득을 통해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
- 게시글 주요 내용

- [1] 위반 법령 내용
  - ▪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유지위반), 제4조 제5항(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의 내용
- [2] 법관윤리강령 취지
  - ▪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관의 의견표명을 금지하는 이유
  - ▪ 법관의 표현의 자유 제한의 근거, 법관의 직무상 내재적 한계
  - ▪ 코트넷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여도 공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전파가능성)
  - ▪ 외국 규정 및 사례 설명
- [3] 과거 김○○ 부장판사의 횡성한우 판결 비판 관련 안내
  -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서면경고를 건의하였다는 내용(심의 내용은 비공개)
- [4] 협조 요청
  - ▪ 내부 구성원들의 동요가 증폭되거나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발전될 기미가 있을 경우 바로 알려 줄 것을 요청

- 유의사항

- 안내글 본문(설명자료가 아닌 안내글 본문)을 법관들에게 그대로 메일링하지는 않도록 요청

- 내부 구성원들이 행정처에서 지침을 준 듯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청

4. 대상별 구체적 대처방안

1) 김○○ 부장판사

1 심리상태, 추가 반응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찰 필요 2 ○○지원 지원장, 동기 부장판사들의 관심 요청

[예상]

▣ **본인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소극적 불인정(윤리감사관실 의견)**

- 형식적으로는 징계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징계 불복 가능성 ⇨ 제한적 소극 입장**

- 더 이상 논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
- 다만,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중략) ⇦ 민변 등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불복하면 적극적으로 변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징계 이후 추가글 게시 가능성 ⇨ 제한적 소극 입장**

- 가족들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 앞으로는 코트넷에 글을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 ⇨ 추가글 게시 가능성은 적음
- 다만, <u>본인이 예측한 것보다 징계 양정이 높게 나오거나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었다고 느낀다면</u> (개인 신상정보이므로 중략) 징계 심의의 부당성에 대한 추가글 게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김○○ 부장판사가 추가글을 게시할 경우 다른 법관들이 동요할 우려

[대응]

▣ **징계결정 사전 통지 ⇨ 충격 최소화**

▣ **심리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 파악**

● (명예관련정보이므로 중략) 매우 세심하고 주의깊은 관찰 필요 ⇦ ○○지원 지원장에게 요청

▣ **지인들을 통한 관심 표명**

● 징계결정 후 ○○지원 지원장, 동기 부장들의 관심, 지원 요청

- 다만, 지나친 위로로 오히려 반감을 사지 않도록 주의
-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과는 구별 필요

▣ **추가글 게시에 대한 대응**

● 대응방법 ⇨ 또다른 논란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 대응

-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원장과 지인들을 통하여 게시글을 내리거나 자제할 것을 권유
-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 지원장과 지인들을 통하여 징계 불복절차에 따라 불복할 것을 권유, 관련 글도 내리도록 권유
- 징계심의 내용이 부당하다거나 징계위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 ⇨ 게시글을 내리도록 권유하고 삭제 등 코트넷운영지침에 따른 필요 조치 후 추가 징계 여부도 검토

▣ **징계불복에 대한 대응**

● 법관징계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 진행

2) 법관 :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에 대한 대응 방안

[1] 법원 내부 분위기 지속적 파악
[2] 법원장, 수석부장 통한 비공식적·간접적 내부 설명, 설득
[3] 코트넷 게시글에 대한 적절하고 신중한 대응
[4]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 문제제기 시 법원 내부의 자연스러운 논의 유도
[5] 논란이 확산되는 최악의 경우 연구회 연구주제로 논의 가능

[예상]

▣ 전반적 분위기

- 법관들은 대체적으로 게시글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이므로 사안 자체에 대해 큰 동요나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법관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일반적 문제 제기 예상

- 징계 수위가 높을 경우, 일부 판사들이 코트넷 게시판에 '법관윤리강령'이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일반적 문제 제기를 하는 게시글을 쓸 가능성이 있음
- ⇨ 게시글에 내용에 동조하는 다른 법관들의 댓글이나 추가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한동안 법관들의 동요가 발생하고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음
- 다만, 법원 내부적으로 게시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러한 동요나 논란이 집단적인 의견으로 집약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대응]

▣ [1단계] 분위기 파악, 간접적 · 비공식적 설명

- 전국 법원 기획법관을 통해 법원 내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파악
- 법원장, 수석부장 등을 통해 간접적, 비공식적으로 법관윤리강령 취지(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제한의 불가피성), 외국 사례 등을 법관들에게 전파

▣ [2-1단계] 코트넷에 글이 게시될 경우

- [1] 게시글에 담긴 내용이 법관윤리강령, 코트넷운영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 게시글에 대한 반박 논거 등을 법원행정처의 공식적 입장으로 게시하

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음 ⇨ 공식적인 논란을 촉발할 우려 있음

- 법원장, 수석부장이 소속 법원 법관들에게 설명자료의 논거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간접적 설명과 설득을 하여 동요를 막도록 함

- 각급 법원 기획법관을 통해 다른 법관들의 반응, 법원 전체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파악함

● **[2] 게시글 내용이 법관윤리강령, 코트넷운영지침에 위배될 경우**

- 코트넷운영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함

- 법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수정 및 삭제권고 등에 있어서 특별히 신중할 필요

- 직권 삭제의 방법은 최후 수단으로 활용

▣ [2-2단계] 다른 법관들의 동요 발생 시 ⇨ 법원 내부의 토론, 논의를 통한 해결 유도

● 법관 세미나 등에서 설명자료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등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법관들이 법관윤리강령의 취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함

▣ [3단계] 내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 가중될 경우 ⇨ 연구회 등 공론의 장 마련

●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징계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일부 법관이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계속 게시될 경우, 법원 단위를 넘어선 집단적 의견 표명이 이뤄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 '법관의 SNS 이용'이 논란이 되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연구회의 연구 주제로 삼아 법원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여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후의 방안으로 고려 가능

3) 법원 직원(노조)

코트넷 게시글에 대한 적정하고 신중한 대응

▣ **예상**

- 원세훈 판결 결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코트넷 게시판에 비판적 취지의 글을 올릴 가능성 있음
- 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현안이 있어 크게 이슈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파급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대응**

- 법관의 코트넷 게시와 동일한 방안으로 대응
- 법원 직원들의 경우 법관들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명예훼손 등 코트넷운영지침에 위배되는 격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큼 ⇨ 코트넷운영지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또다른 논란이 촉발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

4) 정치권

1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거리 유지, 공식적 입장 표명 자제
2 필요한 경우 법사위 위원들에 대한 개별적 설명

▣ **예상**

- 징계가 중할 경우 야당 의원들의 반발 예상
- 반대로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더 중한 징계를 요구하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

▣ **대응**

- 공식적으로는 법관징계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으로서 법원행정처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징계사유(법관윤리강령 위배)만을 발표
-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나 입장 표명은 자제

● 다만, 강경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법사위원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설명자료 등을 통해 좀더 자세한 징계사유 또는 법관윤리강령의 취지를 설명할 필요 있음 ⇨ 향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법원의 입장을 잘 설명

- 게시글 내용이나 정치적 입장과는 관계없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동료 법관의 의견 표명 자체를 금지한 법관윤리강령 위배 행위이고, 특히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했다는 점을 강조

5) 언론 / SNS

1 공식적 입장 표명 자제
2 언론의 성향에 맞는 공보관실의 비공식적·개별적 설명, 설득
3 논란 가중 시 우호적 인사의 기고문 작성 등 고려

▣ 예상

● 중징계 시 진보언론과 SNS의 비판적 기사, 게시글 올라올 가능성

● 반대로 보수 언론의 경우 더 중한 징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판사의 업무 배제, 재임용 심사 강화 등을 요구하는 비판 기사를 쓸 가능성

● 다만, 시의성이 떨어져 법관들 내부의 추가적 문제제기 등이 없다면 크게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높음

▣ 대응

● [1단계] 공식적 입장 표명 자제, 공보관실을 통한 내부 설명과 설득에 집중, SNS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여론 추이 파악

● [2단계] 지속적으로 비판 기사 및 여론이 심화될 경우 우호인사 기고(설득 논리 제공) 등 방안 고려 가능

5. 결론

▣ 징계결정 이후 주요 대응기조에 맞추어 대상별로 대응하도록 함

● 빠른 상황 파악을 통한 적시 대응, 논란 확산 방지

●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 법관징계위원회 결정과의 거리 확보

- 다각도의 우회적, 개별적 설명
- 신중한 대응을 통해 논란거리 발생 가능성 차단

▣ **김○○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 관찰 필요**

▣ **법관의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응**

- 각급 법원 법관들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파악
- 법원장, 수석부장 커뮤니티에 설명자료 게시 ⇨ 자연스러운 설명, 설득
- 각급 법원 내부의 자체적·생산적 논의를 통한 해결 유도
-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연구회 연구 등 방안 고려